

신·구조문대비표(금융투자업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p> <p>2.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p> <p>② 영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 <p>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p> <p>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
| <p>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p> | <p><삭 제></p> |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법 제9조제15항 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③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란 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1. 보유총잔고 :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증인 증권의 수량
-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이전에 차입한 이후,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않은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제3항의 각 호에서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 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

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 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5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삭 제>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법 제393조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 또는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 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

③ 영 제208조의2제5항의 요건-----

-----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

<단서 삭제>

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
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 8. (생 략)

⑤ · ⑥ (생 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08조의2제5항에 따라

-----.

1. ~ 8.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
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중
권시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
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
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

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
다.

제6-32조(독립거래단위의 운영)

①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
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33조(자료의 제출) 금융감
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
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 및 제6-31조제1항의 요건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독
립거래단위 운영과 순보유잔
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2조(독립거래단위의 운영)

① 영 제208조제3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3조(자료의 제출) -----

----- 운영하는
자 ----- 운영에
관한 사항을 -----
-----.